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3 년 3 월

• 예규·판례

가. 이 건에서 1 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 간인 20 ○○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 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 ○○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 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 부 8206 , 2023.03.07)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의류제조 판매업체로, 그간 물품판매시점을 국세청해석에 따라 장부(기업회계)와 다르게 인식하여 법인세신고(세무조정)를 하다가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라는 기획재정부 해석 ○○○ 에 따라 재고자산임에도 전기에 판매된 것으로 미리 인식하여 과다 신고. 납부한 2002~202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 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6~2020 사업연도만을 경정(이하 “1 차경정”이라 한다)하자, 1 차경정을 근거로 그 이전 분(2002~2015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함

- 처분청은 1 차경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의 범위는 2015 사업연도 기말재고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2022.7.18. 2015 사업연도의 기말재고만을 추가로 경정(이하 “2 차경정”이라 한다)하되,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1 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15 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 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과세권자는 당초 결정·경정에 부수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등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므로, 당초 결정·경정에 따르지 않거나 직접적인 연동이 없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1 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15 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 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기존 임대차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쟁점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 2022 서 7852, 2023.03.03)

■ 처분의 경위

- 청구인 AAA.BBB 는 부부이고, 청구인 CCC.DDD 은 그 자녀들이다. 청구인들은 000 대 12,077 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표 1> 기재와 같은 소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AAA 의 동생 EEE 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은 소유지분을 소유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에서 관광호텔(이하 그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경영함

- EEE 은 쟁점토지와 건물에서 계속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및 FFF, GGG, HHH, III, JJJ 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임차함
- 청구인들은 EEE 을 상대로 2013 년 1 월부터 2015 년 12 월까지의 연체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5.14. 청구인들의 승소판결(000 법원 2015 가합 000 호)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EEE 이 항소하였으나 2016.11.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자 EEE 은 2016.11.26. 청구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은 <표 3>의 종료일란 기재 날짜에 각 종료됨
- 청구인 AAA, BBB, CCC 은 EEE 에게 <표 4> 기재와 같이 2013.1.1.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12.31.까지의 연체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였다. EEE 은 청구인 DDD 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2013.1.1.부터 2016.12.31.까지의 임대료 000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1.1.부터 2017.12.31.까지의 임대료 000 원은 지급하지 않음
- EEE 은 청구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쟁점토지 및 건물을 계속 관광호텔의 운영을 위하여 점유. 사용하였다가, 쟁점토지 및 건물이 2019.5.10. 주식회사 KKK 에 매도됨에 따라 2019.6.30. 사실상 관광호텔의 운영을 종료함
- 이에 따라 청구인 AAA, BBB, CCC 은 EEE 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등 약정내용을 토대로 각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7.1.1.부터, 청구인 DDD 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8.1.1.부터 각 2019.6.30.까지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 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물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증가분도 EEE 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 5>, <표 6> 기재와 같이 금액을 산정하여 000 법원 2019 가합 000 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
- 청구인들은 2022.3.18.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표 5> 기재 임대료상당액 000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 원, <표 6> 기재 재산세 증가분 000 원을 지급받음
- 처분청은 위 <표 5> 기재 임대료 상당액 000 원을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2022.8.22. 청구인들에게 <표 7> 기재와 같이 2022 년 제 1 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 「부가가치세법」 제 7 조 제 1 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 3 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용역의 무상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5.7.14. 선고 95 누 4018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 두 8534 판결 등, 같은 뜻임)
- ✓ 청구인들은 2004.1.1. EEE 과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6.11.28. EEE 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할 때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기존 임대차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쟁점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조심 2010 중 2898, 2011.12.23., 같은 뜻임)

다. 「조세특례제한법」제 100 조의 32 제 2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서면-2023-법규법인-0390 [법규과-815], 2023.04.03)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화장품 원료, 건강식품 원료 등의 제조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임
- 질의법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약 300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월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월의 1 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후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 100 조의 32 제 2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월의 1 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이하 '퇴직월 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1 안)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 (2 안)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서 제외됨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 100 조의 32 제 2 항 제 1 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퇴직월의 1 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말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00 조의 32 제 9 항에 따른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 것임

라.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2023.03.27.)

■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대가 중 일부가 美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美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

■ 질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8 조의 2 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 1 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제 2 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 안이 타당함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